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정제도

보정제도는 조기 세액확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.

-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 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.

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정·수정·경정제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

-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⇒ '보정신청'
-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⇒ '수정신고'
-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⇒ '경정청구'

구분	보정신청	수정신고	경정청구
신고시기	납부한 날로부터 6월 이내(보정기간)	보정기간 이후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*	(경정청구의 경우) 신고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
증액여부	증액	증액	감액
보정이자	○	×	×
가산세	×	○	×
납부기한	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	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	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

※ 관세부과제척기간 : 5년 또는 10년(관세포탈, 부정환급 등)

- 보정이자 산정기간을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.

이전	•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세액 납부일까지
개선	•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

보정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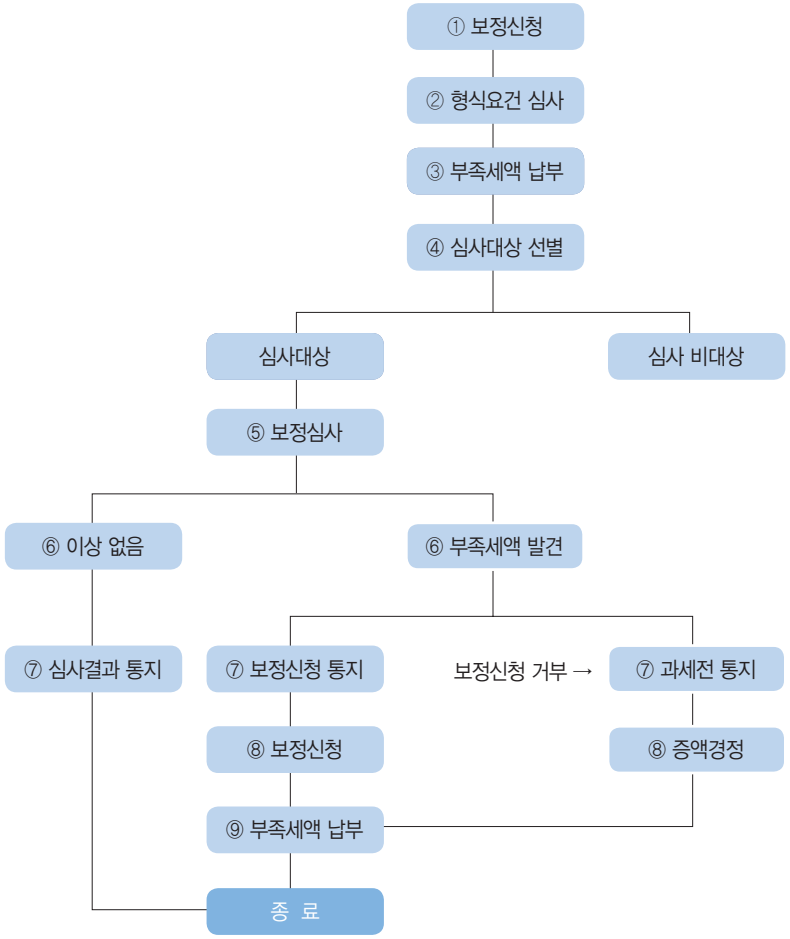

문의처

☎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-481-7958